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71호
2. 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1. 5. 28.
4. 회부일자 : 2021. 5. 31.

II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는 1991년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을 비준함에 따라,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, 교육권,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.
- 그러나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기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누리과정비 조차 외국인의 경우엔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교육 현장에서 만큼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- 또한 다문화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다문화교육 사업을 역량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교육 수요를 충족

하고,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III. 주요내용

-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 신설).
-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의2 신설).

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71호로 발의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고,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

-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지원 되고 있지만,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,

우리나라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원(교육과정 8만원, 방과후과정 5만원), 사립유치원 월 33만원(교육과정 26만원, 방과후과정 7만원)씩 학비가 지원되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.

-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을 비준한바 있으며,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그리고 동 협약에 따르면 ‘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, 어떤 인종이건, 어떤 종교를 믿건,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, 부자건 가난하건, 장애가 있건 없건,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.’는

‘비차별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‘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’을 제안하였고,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의 「유아학비 지원계획」 지침 개정<sup>1)</sup>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.

○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<sup>2)</sup>,

동 개정조례안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.

#### 나. 안 제3조의2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3조의2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, 같은 조 제3호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하여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는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적용과 아동 인권의 보호라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합니다.

특히 그 적용범위를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함으로써 국내 모든 유아들의 수혜기간을 동일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<sup>3)</sup>

1) 現 지침 상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함)

2) 보도자료 : ‘사립유치원은 학비 돌려주는데...공립 다니는 외국인도 내라니’(연합뉴스, 2020.4.23.)

- 다만 서울시 관내 유치원에는 684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인바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1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<sup>4)</sup>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588, 2021.6.4.).

**[표] 서울시 만 3~5세 외국 국적 유아 유치원 재원 현황**

(‘21. 4. 1. 기준, 단위 : 개원, 명)

전체 유치원 수	외국유아 재원 유치원 수(비율)	전체 유아 수	외국유아 수(비율)
789	280 (35.4%)	69,564	684 (1.0%)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3) 제24조(무상교육)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하되,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18.7억원 = 공립유치원 463,680천원[교육과정(80,000원 × 318명 × 12월)+방과후과정(50,000원 × 264명 × 12월)] + 사립유치원 1,404,840천원[교육과정(260,000원 × 366명 × 12월)+방과후과정(70,000원 × 313명 × 12월)]

# 관계 법령

## 다문화가족지원법

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1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4. 4., 2015. 12. 1.>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3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12. 2. 1., 2015. 12. 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2. 2. 1.>

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[시행 2017. 10. 31.] [법률 제14974호, 2017. 10. 3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23.>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